

◆ 상품내용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장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서 상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급보장일자 이전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배상청구기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상기 조항은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이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의료사고)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불만족에 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해자(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참조

◆ 특징 및 장점

의료과실 기본 담보 및 선택 담보들로 다양한 위험의 보장이 가능

구 분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기본담보)	의료과실	전문적인 의료행위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민사소송 대행 가능)
특별약관 (선택담보)	일반배상책임	의원 및 병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주차장 / 생산물(음식 등)은 제외)
	경호비용담보	의료 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 강요에 대응하여 사건 처리 수습,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경호 비용을 보상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의료행위의 결과로 환자의 사망(뇌사 포함)시 환자측이 피보험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의료분쟁을 제기하여 보험회사에 의료분쟁조정이 접수되거나 사법 기관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건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또는 형사 합의금을 보상
	벌금	의료행위 수행 중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담하는 벌금을 보상
	형사방어비용 (Ⅰ),(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방어비용(Ⅰ) 의료사고로 인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보상 •형사방어비용(Ⅱ) 특별약관(Ⅱ)를 가입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었을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을 경우 예도 형사 방어비용을 보장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p>피보험자의 의료행위 결과로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자의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당한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폭행을 가하여 신체 장애를 입은 경우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당한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보험자에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하는 시설 또는 가재 등 재물에 입힌 손해
	외래진료 휴업손해	<p>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 등으로 부득이 휴업하거나 회사의 요청에 의해 관계 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한 때에는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보험기간 중 하나의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 내에서 1일 500,000원의 외래진료 휴업 손해를 보상.</p> <p>이 경우의 휴업은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 진료를 휴진한 것을 말함</p>

한의사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프로그램 주요내용

보통약관 담보플랜

[보통약관 (기본담보) - 의료과실]

공제금액 \ 보상한도액	1청구당 5천만원/ 연간 총 1억원	1청구당 1억원/ 연간 총 2억원
5십만원	Case1 : 248,850원	Case4 : 279,300원
1백만원	Case2 : 210,000원	Case5 : 235,200원
2백만원	Case3 : 191,100원	Case6 : 216,300원

특별약관 담보

의사배상 기본 담보 및 선택 담보들로 다양한 위험의 보장이 가능

특약담보	한도금액	특약보험료
일반배상책임	1청구당 2백만원/ 연간 총 4백만원	24,000원
경호비용	1청구당 2백만원/ 연간 총 4백만원	48,000원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1청구당/ 연간 총 5백만원	76,000원
벌금	1청구당/ 연간 총 2천만원	29,000원
형사방어비용 (I /II)	1청구당/ 연간 총 5백만원	I : 25,000원 II: 56,000원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1청구당 5천만원/ 연간 총 1억원	32,000원
외래진료 휴업손해	1일 5십만원(최대 15일)	141,000원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할인·할증

손해액	할인/할증율
직전 3개년 무사고 한의사	30% 할인
직전 1~2개년 무사고 한의사	5% 할인
신규 한의사	기본보험료
전년도 유사고 한의사 (보험금 2백만원 미만)	25% 할증
전년도 유사고 한의사 (보험금 2백만원 초과)	60% 할증
과거 4개년 보험금 지급 2건 이상 발생 한의원	인수 거절
과거 4개년 보험금 1천만원 이상 발생 한의원	인수 거절

피보험자 부담비율

피보험자 공동 부담 비율은 일괄적으로 30%를 적용합니다.

- 확정된 보상금액(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등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 를 추가로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단, 전년 유사고 병원에 대해서는 40 % 적용.

DB손해보험 한의사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신규 가입신청서

1. 보험계약 기본정보

보험기간	20 년 월 일 (24:00) - 20 년 월 일 (24:00)	
피보험자	한의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면허번호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번호
의원주소	()	
타사보험 가입경력	<input type="checkbox"/> 신규가입	<input type="checkbox"/> 가입경력 있음 소급담보 기준일 (신규가입 시 미기재)
전년도 사고이력 (신규가입 시 미기재)	<input type="checkbox"/> 손해액(백만원)	<input type="checkbox"/> 무사고 확인 (신규가입 시 미기재)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무사고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무사고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무사고

2.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1) 보통약관(기본담보)

보상한도액	1청구당 5천만원 / 연간 총 1억원	1청구당 1억원 / 연간 총 2억원
1청구당 공제금액	5십만원	1백만원
	<input type="checkbox"/> Case 1 248,850원	<input type="checkbox"/> Case 4 279,300원
	<input type="checkbox"/> Case 2 210,000원	<input type="checkbox"/> Case 5 235,200원
	<input type="checkbox"/> Case 3 191,100원	<input type="checkbox"/> Case 6 216,300원

* 공제금액 : 보험사고시 손해액의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해당 공제금액 초과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적용됩니다.

(2) 특별약관(선택담보)

특별약관명	보험료	보상한도액	1청구당 공제금액
<input type="checkbox"/> 일반배상책임	24,000원	1청구당 2백만원 / 연간 총4백만원	1십만원
<input type="checkbox"/> 경호비용	48,000원	1청구당 2백만원 / 연간 총4백만원	없음
<input type="checkbox"/>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76,000원	1청구당 5백만원 / 연간 총5백만원	없음
<input type="checkbox"/> 벌금	29,000원	1청구당 2천만원 / 연간 총2천만원	없음
<input type="checkbox"/> 형사방어비용 I	25,000원	1청구당 5백만원 / 연간 총5백만원	없음
<input type="checkbox"/> 형사방어비용 II	56,000원	1청구당 5백만원 / 연간 총5백만원	없음
<input type="checkbox"/>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32,000원	1청구당 5천만원 / 연간 1억원	없음
<input type="checkbox"/> 외래진료 휴업손해	141,000원	1일 5십만원 (최대15일)	없음

- 휴업, 폐업, 이직 등의 사유로 무사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갱신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 종료 후 1개월로 제한되며, 회사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급 담보일을 소급하여 적용해드리기 때문에 보험료는 연간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갱신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경우 소급담보일(최초보험가입일)은 보험 재가입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기본보험료에서 일할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나, 변경된 소급담보일로 인하여 보험재가입일 이전에 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보험료 납입방법

입금일	년 월 일	보험료 합계		
납입방법	<input type="checkbox"/> 계좌입금	의사배상책임보험	기업은행 337-120099-93-221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 입금시 면허번호 기재 ※
		카드명이자 사업자번호(혹은 생년월일)	할부	

<보험가입 및 사고접수>

전화번호 : 02-717-9480

팩스 : 02-6944-9440

대리점 : 한국단체보험연합 (등록번호:제1999081379)

